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황정아·박홍배·진성준

정진욱 • 백승아 • 김남근

이재관 • 양부남 • 문금주

박희승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오히려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임.

또한 공전이 거듭될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도 시급한 입법이 지연되어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

비를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등의 감액) ①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결석한 회의 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감액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수당 등의 감액) ① 국 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 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 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 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 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 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 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 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

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결석한 회의 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감액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